

부산지방법원 2022. 5. 18 선고 2021나61390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2. 5. 18 선고 2021나61390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7. 20 선고 2021가소109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변론종결 2022. 4. 13.

판결 선고 2022. 5. 18.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7. 20. 선고 2021가소109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분 등을 공시송달로 송달하여 재판을 진행하여 2021. 7. 20.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는데, 피고는 2021. 9. 6. 이 사건 기록을 열람함으로써 위 판결이 있는 것을 알고, 그로부터 2주일 이내인 2021. 9. 8.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다툼 없는 사실

C의 채권자인 원고의 요청에 의해 C가 2018. 5. 9. 피고 명의 계좌로 9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살피건대, 갑3호증의 기재와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채무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C로 하여금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원고의 C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5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잘못 송금된 돈임을 알고 2018. 5. 11. 원고의 배우자 D 명의 계좌로 950만 원을 송금하여 반환하였다고 다투나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반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하여 2018. 5. 8.자 차용증을 증거로 원고에게 천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대여금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2020가소539806)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에서 피고가 2018. 5. 11. D에게 950만 원을 송금하여 원고에게 대여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다. 다음으로 피고는, 2018. 5. 8.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금 천만 원 지급채무를 차용금채무로 하기로 합의하면서 같은 날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이를 변제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2018. 5. 8.자 차용증을 증거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착오 송금된 9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송금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1.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서호원

판사이은명

판사정일예